

■ **신혼부부 특별공급**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: 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18% 범위)

※ 특별공급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.

구분	내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예 거주 ② 혼인기간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 ③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) 단, 2018년 12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④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」 관련 법령에 의함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11.16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%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%(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)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(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) ③ 남은 주택(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)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(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)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
경쟁 시 우선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-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. ① 제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(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 자[「민법」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(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)를 포함] *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입양포함)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: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→ 무자녀 또는 2018.12.11.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-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)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 수가 많은 자 *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*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-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(대전광역시)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.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신의 경우 '임신진단서', 입양의 경우 '입양관계증명서' 등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」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•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. •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•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•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·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(23.11.10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)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 자료이며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'입주자 모집공고'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공급유형		구분	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						
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소득 기준 구분	우선 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~7,004,509원	~8,248,467원	~8,775,071원	~9,563,282원	~10,351,493원	~11,139,704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20% 이하	~8,405,411원	~9,898,160원	~10,530,085원	~11,475,938원	~12,421,792원	~13,367,645원
	일반 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~140%이하	7,004,510원 ~9,806,313원	8,248,468원 ~11,547,854원	8,775,072원 ~12,285,099원	9,563,283원 ~13,388,595원	10,351,494원 ~14,492,090원	11,139,705원 ~15,595,586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~160%이하	8,405,412원 ~11,207,214원	9,898,161원 ~13,197,547원	10,530,086원 ~14,040,114원	11,475,939원 ~15,301,251원	12,421,793원 ~16,562,389원	13,367,646원 ~17,823,526원
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40%초과,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9,806,314원~	11,547,855원~	12,285,100원~	13,388,596원~	14,492,091원~	15,595,587원~	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초과,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11,207,215원~	13,197,548원~	14,040,115원~	15,301,252원~	16,562,390원~	17,823,527원~	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 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추첨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자료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'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②,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신규취업자 : ①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(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, 직인날인 필수) 계속근로자 :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④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	①,② 해당직장 ③,④ 세무서
자영업자	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② 세무서
	법인대표자	①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전년도 재무제표	① 등기소 ②,③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[국민연금 미가입자]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직인 날인)	①,② 해당직장/세무서 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
일용근로소득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	①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②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	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	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 자료이며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'입주자 모집공고'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